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항공분야 신산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수소 경제 활성화의 조속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총괄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서비스 투자 분야 통상 협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통상 분쟁 소송 증가에 따른 대응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마산자유무역원의 국유재산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적합성 평가제도의 내실화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통상정책국 1개 과(디지털경제통상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장비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자동차항공과로 이관하여 업무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3. ~ 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항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3호부터 제28호까지 중 “일반기계·장비·로봇·방위산업”을 각각 “일반기계·장비·로봇 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15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16.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7.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8. 민·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제38조의3을 삭제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3(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①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2.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3. 핵심 소재·부품·장비별 사업 기획 및 개발의 종합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지원정책의 조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시행
7.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③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3 총계 “883”을 “888”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76”을 “881”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42”를

“247”로 한다.

별표 3의2 총계 “883”을 “888”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77”을 “882”로 하며, 일반직 계 “865”를 “87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서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68”을 “273”으로 한다.

별표 4 총계 “222”를 “224”로 하고, 가.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221”을 각각 “223”으로 하며, 공업연구사 “30”을 “32”로 하고, 총계 및 일반직 계 “17”을 각각 “18”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을 “4”로 한다.

별표 4의2 총계 “219”를 “221”로 하고, 가.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218”을 각각 “220”으로 하며, 공업연구사 “26”을 “28”로 하고, 총계 및 일반직 계 “17”을 각각 “18”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을 “4”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39조제4항, 제40조제7항, 제41조제9항, 제41조의2제2항 및 제41조의3제2항 관련)”을 “(제39조제4항, 제40조제7항, 제41조제9항, 제41조의2제2항 및 제41조의3제3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

호 각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재생에너지정책단(존속기한: 2022년 2월 28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산업정책실) ① ~ ⑨ (생략)	제8조(산업정책실)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기계로봇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삭제>
20.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삭제>
21.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삭제>
22. 민·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삭제>
23. 일반기계·장비·로봇·방위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3. 일반기계·장비·로봇 산업 ----- ----- -----
24. 일반기계·장비·로봇·방위산업 관련 전시·경진대회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4. 일반기계·장비·로봇 산업 ----- -----
25. 일반기계·장비·로봇·방위산업의 통계 조사 및 시장분석	25. 일반기계·장비·로봇 산업 ----- --

26. <u>일반기계·장비·로봇·방위산업</u>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 개선	26. <u>일반기계·장비·로봇 산업</u> ----- -----
27. <u>일반기계·장비·로봇·방위산업</u> 관련 기관 및 사업자 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27. <u>일반기계·장비·로봇 산업</u> ----- -----
28. 그 밖에 <u>일반기계·장비·로봇·방위산업</u> 관련 사항 및 제조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8. ----- <u>일반기계·장비·로봇 산업</u> ----- ----- -----
⑪ 자동차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설>	15. <u>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시행</u>
<신설>	16. <u>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u>
<신설>	17. <u>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u>
<신설>	18. <u>민·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u>
15.·16. (생략)	19.·20. (현행 제15호 및 제16호와 같음)
⑫ ~ ⑮ (생략)	⑫ ~ ⑮ (현행과 같음)
<u>제38조의3(평가대상 조직) 산업통</u>	<u><삭제></u>

상자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41조의3(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①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제41조의3(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①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2.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3. 핵심 소재·부품·장비별 사업 기획 및 개발의 종합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지원정책의 조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u>6.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 · 시행</u> <u>7.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u> <u>③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u>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83</u>	<u>888</u>	+5
1.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876</u>	<u>881</u>	+5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 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 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 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 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 ·	<u>242</u> · ·	<u>247</u> · ·	+5
--	-------------------------------------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83</u>	<u>888</u>	+5
1.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877</u>	<u>882</u>	+5
·	·	·	
·	·	·	
일반직 계	<u>865</u>	<u>870</u>	+5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 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 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 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 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 ·	<u>268</u> · ·	<u>273</u> · ·	+5
--	-------------------------------------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222</u>	<u>224</u>	+2
가.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221</u>	<u>223</u>	+2
일반직 계	<u>221</u>	<u>223</u>	+2
•	•	•	
•	•	•	
공업연구사	<u>30</u>	<u>32</u>	+2
•	•	•	
•	•	•	
총계	<u>17</u>	<u>18</u>	+1
일반직 계	<u>17</u>	<u>18</u>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 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3</u>	<u>4</u>	+1

	.	.	.	
	.	.	.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219</u>	<u>221</u>	+2
가.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218</u>	<u>220</u>	+2
일반직 계	<u>218</u>	<u>220</u>	+2
·	·	·	
·	·	·	
공업연구사	<u>26</u>	<u>28</u>	+2
·	·	·	
·	·	·	
총계	<u>17</u>	<u>18</u>	+1
일반직 계	<u>17</u>	<u>18</u>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 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3</u>	<u>4</u>	+1
·	·	·	

